

2024년도 재단법인 「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」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2023-105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0. .
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에 의거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“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”에 266,5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근 거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
- 출연대상: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
- 출연금액: 금266,500천원
- 출연시기 및 방법: 2024. 1월 중 현금출연

4. 참고사항: 관계법령

관 계 법 령

1. 지방재정법

■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■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- 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■ 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

1. 재단 설립일: 2012. 12. 17. [업무개시: 2013. 3. 4.]

2. 재단 직원 현황: 총 8명 [이사장(무보수), 팀장 2명, 직원 5명]

※재단직원 4명, 파견공무원 3명

3. 출연금액: 266,500천원(이억육천육백오십만원)

4. 연도별 출연금 교부 현황

[단위: 천원]

연도	2022년	2023년	2024년	비고
출연금 교부액	256,000	260,000	266,500 (전년도 대비 6,500천원 증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단 종사자 인건비 인상, 승급(호봉승급 포함)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(14,280천원) ○ 일반경비 절감 노력 및 자체 예산 분담 등에 따른 경비 감액(4,780천원) ○ 사업비 감액(3,000천원)

5. 2024년도 출연금 내역

[단위: 천원]

구분	총계	인건비						경비			사업비		
		소계	급여 및 제수당			연월차 보상등 별도 수당	퇴직 급여	소계	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등	사회 보험 부담금 등	자산 취득비	소계	강서구 사회복지 종사자 실무자교육
			팀장 (2급) 1명	직원 (4급) 1명	직원 (5급) 2명								
금액	266,500	207,010	58,654	46,920	79,287	6,309	15,840	56,490	33,690	19,680	3,120	3,000	3,000